

# 2023년도 제2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10. 26.(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원(분과위원장), 심동섭, 최진원, 하병현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52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08건(안전번호 제2023-208602호~210609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208602호~208604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08605호~208606호는 카페 및 블로그에 음악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감상평,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08607호~208608호는 카페에 음악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감상평,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으며, 링크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208609호~208610호는 카페 및 블로그에 음악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감상평, 후기 등을 함께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 35조의5의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208611호~208614호는 카페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208614호~210609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전 게시물 2,84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6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3-252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반하람 주임: 제2023-252회 제1호 안전인 시정권고 심의 회의록 내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에 대해 만장일치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음. 제1호 안전 부분에서 저작물명등 심의대상 게시물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 3. 안전상정

####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원 분과위원장: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3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2,868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3번은 보

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및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인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5건임.

(순번 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블로그의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 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인 '■■■'로 연결됨.

직접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총 31개 중 17개는 2022~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 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순번 1번 내지 3번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외사이트 게시자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번 내지 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3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번 내지 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게시자가 자신의 생각 등을 내용으로 하는 후기 글을 작성하면서 ♡ ♡ 카페 및 ♣♣♣ 블로그에 스트리밍 형식으로 음악 저작물을 제공한 사안 총 6건임.

(순번 4번 내지 9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여행 사진, 독서 감상문, 동호회 모임 후기 등과 함께 음악 '●●● ● ●●●● ●●', '♠♠♠♠♠ ♠♠' 등의 전체 분량을 직접전송 및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음악저작물과 함께 감상평, 후기 등을 게재하고 있기는 하나 저작권법 제28조 및 제 35조의5의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다만,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블로그나 카페 등에 음악을 게시할 때 직접 구매해서 게시하는 방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이러한 합법적인 방식으로 게시하지는 않은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B 위원: 기존에 비슷한 유형의 게시물들을 다룬 심의 사례가 있는가.

- 반하람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과 유사하게 카페 및 블로그에 음악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에 대해 대부분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 해온 바 있음. 다만, 제2023-252회 안건의 경우 음악 불법복제물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아 부결함.
- C 위원: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하는 이유는 게시물의 내용을 고려했을 때 게시물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인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C 위원: 순번 4번 내지 9번 중에 제2023-252회 안건과 비슷한 유형의 링크 게시물이 있는가.
- 반하람 주임: 순번 6번 내지 7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제2023-252회 안건과 유사하게 ▲▲▲▲▲의 플레이어를 이용하고 있음.
- D 위원: ♡♡과 ♣♣♣ 등의 OSP에서 영상이나 음악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 할 때 DB에 등록되어 있는 저작물일 경우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불가능하게 하는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은 어떤 방식으로 필터링을 피해서 음악을 게시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임. 다만, 음악을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링크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다른 사이트에 업로드된 원본의 불법성이 의결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4번 내지 9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위원: 순번 4번 내지 5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함.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 내지 5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B 위원: 순번 6번 내지 7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부결 의견임.
- C 위원: 제2023-252회 안전과 유사한 게시물로 통일성 있는 심의를 위해 부결의견임.
- A,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통일성 있는 심의를 음악 게시물의 임베디드 링크 사안에 대해서 다른 분과위원회에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 반하람 주임: 공유하도록 하겠음.



- B 위원: 링크 사용 및 필터링 시스템과 같은 다음과 네이버 등의 OSP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되는 정보가 있다면 추후에 공유해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순번 6번 내지 7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 B 위원: 순번 8번 내지 9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에 동의함.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참석 위원 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원 분과위원장: 순번 8번 내지 9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번 내지 13번은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방송)의 불법복제물 총 9건임.  
(순번 11번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블로그에서 방송 '★★★★ ★★ ★★'를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 중임.  
순번 10번 내지 13번의 9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

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번 10번 내지 13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검토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0번 내지 13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4번 내지 2,00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2,848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예능 '데블스 플랜'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2번은 웹하드에서 예능 '데블스 플랜' 1화~12화 전체분량을 33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9. 26.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예능 프로그램임.  
(드라마 '이두나!'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10번은 웹하드

에서 드라마 '이두나!'의 1화~9화 전체분량을 40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10. 20.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영화 '잠'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00번은 웹하드에서 영화 '잠'의 1시간 21분 전체분량을 570 캐시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9. 6.에 극장 개봉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김원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순번 14번 내지 2,008번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순번 14번 내지 2,008번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김원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4번 내지 2,008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208602호~208604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08605호~208606호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08607호~208608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08609호~208610호는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08611호~208614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208615호~210609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김원 분과위원장이 제2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6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11. 2.

분과위원장 김 원

위원 심동섭

위원 최진원

위원 하병현